

14-다. 교지(校地) 확보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**대학원대학**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6년 4월(국·공·사립대학 교육시설 현황 접수 및 집계)

【공시시기】 : 2026년 10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사학진흥재단)

【공시내용】 : 2026년 교지(校地) 확보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 : 2026. 4. 1.)

(단위 : m²)

기준연도	토지 전체면적(m ²)	교지 보유면적(m ²)	부속토지(m ²)	미사용토지(m ²)

※ 사이버대학은 본 항목의 공시대상에서 제외

■ 작성지침

【토지 전체면적】 : 학교법인이 소유한 토지면적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라 학교용지로 결정된 토지 및 미결정 토지)

※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제외

【교지 보유면적】 :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5조에 의하여 대학이 교육·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단, 농장, 학술림, 사육장, 목장, 양식장, 어장, 약초원 등 실습지 및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는 제외)

① 캠퍼스 교지경계선 내에 위치함

②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함

※ 이 경우,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km 이내여야 함

③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·군·구 내에 위치함

④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에 설치한 경우 도시·군계획시설 상 ‘학교’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지를 교지로 인정

【부속토지】 : 교육용 건물 중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[별표 2] ‘교사시설의 구분’에 따른 부속시설이 설치된 토지

【미사용토지】 : 교육·연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

■ 참고사항

- 교지(校地) 확보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